

저작권인식 확산, 전문가 양성 시급

새 저작권법 시행1년의 평가와 전망

윤희창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지난 7월 1일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지난 57년에 제정된 이래 한번의 개정도 없이 30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저작권리의 신장과 외국저작물 보호를 위하여 86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작년 7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새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불과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이의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으나 지난날과 비교하여 우리의 저작품도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행업체 24개...42건 증가

먼저 지난 1년은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체계를 갖추어 가는 한 해였다. 법시행일과 동시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어 저작권에 대한 심의와 홍보, 저작권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년 12월에는 문화공보부 저작권과가 신설되어 국가차원에서 저작권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위해 저작물을 관리·중개하여 주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이 새 저작권법에 의해 신설되었다. 이러한 관리업은 국내 저작자의 권리를 집중관리하는 신탁관리업과, 주로 외국저작물을 국내에 중개하여 주는 대리·중개관리업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신탁관리업에 있어서는 작곡가·작사가의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88년 2월에 문화공보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방송작가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방송작가협회'가 현재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작가·대학교수 등 저술인의 모임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신탁관리업 허가 취득을 위해 먼저 사단법인허가를 문화공보부에 신청중에 있다.

저작권의 국제적인 대리나 중개를 목적으로 한 위탁관리업은 현재 문화공보부로부터 총 24개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업체수에 비하여 아직까지 그 활동은 저조하다. 이는 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은 얼마든지 자유이용이 가능하여 국내 업체가 대부분 이를 집중 이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대리·중개관리업을 통한 외국저작물의 중개건수는 42건에 달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일본·영국의 순서이며 이용형태별로는 번역이용이 28건, 복제이용이 14건이다. 이밖에도 관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수출도 추진되어 한국의 역사, 전래동화, 창작그림책 등 한국고유의

새 저작권법 시행 이후

출판·방송·음악 분야에서는

괄목할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의 관리·보호·

이용체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반면

일반국민의 저작권 인식이나

전문학자 양성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소재를 채택한 창작물이 일본에 9건, 자유중국에 3건, 프랑스에 1건 등이 계약완료되었거나 교섭이 추진중이다.

음악·방송분야선 괄목한 진전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의 관리·보호·이용체계가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출판·잡지·방송·음악 등의 관련업계에 단체 등에서 저작권에 관한 많은 강좌를 개설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스컴의 지속적인 보도에 힘입어 1년전보다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으나 아직도 일반국민의 관심은 낮고 연구활동도 미진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과 4월에 부산, 대구, 춘천에서 순회 개최한 저작권지방강연회의 청중이 그 지방에서 시도된 저작권 첫강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백여명에 불과했다. 저작권에 대한 연구나 전문학자 양성도 아직까지 미진하여, 최근 문화공보부가 전국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작권강의실태에 의하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지적소유권강좌를, 기타 7개 대학이 다른 강좌의 일부내용으로 저작권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반면에 일부 저작권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과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막연한 권리주장과 무리한 요구로 저작물이용자와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년간 저작권법시행에 따라 가장 변화가 많았던 분야는 음악과 방송 및 출판분야 일 것으로 생각된다.

구저작권법하에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약했던 음악저작자의 권리는 방송으로부터 완전 보호되어 이들의 권리를 신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사용료조로 방송과 유호업소 등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87년에는 1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89년도에는 연간 30억원으로 대폭 증가될 예정인데, 이는 협회회원인 작곡가 및 작사자에게 사용빈도에 따라 분배된다.

한편 저작물의 종합사용처인 방송은 신규로 작곡가 및 작사가에게 음악사용료를, 실연자단체 및 음반제작자 단체에는 각각 저작권접권 사용의 보상금을, 방송작가에게는 재방시 추가저작권료를 새로이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저작권의 인식강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분쟁사례도 발생하게 되어 인적·물적부담이 가중되었다. 지난 4월의 텔레드라마와 드라마의 결방사태도 크게는 향상된 저작권의 인식과 연관된 것으로, 결국 자유출연제의 조기실시를 앞당기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외출 무단복제 8건 고소 제기

출판분야에 있어서는 출판문화협회가 발간한 87년도 출판년감에 의하면 총발행도서에 대한 번역도서의 비율은 85년이 25.2%, 86년이 20.1%로 비교적 그 비중이 낮으나 이밖에 복제, 인용, 표절 등으로 이용되는 외국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통상 국내 출판물의 절반 가량이 외국저작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출판계는 외국저작물보호시 과도한 로열티지불과 외국선진지식의 국내소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세계저작권 협약의 가입을 반대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미국저작물과 관련된 출판분쟁은 번역이용보다는 복제분야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외국에서 처음 출판된지 평균 1년이 경과한 후 국내에 번역되었던 통상적인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외서수입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저작권협약이 발효된 87년 10월 1일 이후 출판된 외국저작물로서 국내에서 완전 보호 받는 출판물을 무단복제하여 문제가 되고 있

는 것은 현재 21건으로, 이중 8건이 저작권침해로 형사상의 고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저작권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외국에 지불된 로열티는 극히 미미하며, 외국의 선진과학기술도서는 일부 원서수입과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한 복제이용으로 당초의 우려보다는 커다란 문제점은 야기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분쟁 늘어날 소지 많아

그러나 법시행과 외국저작물의 보호가 2년째로 접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호받는 외국저작물이 누적적으로 증대되어 이를 출판·연극 등에서 번역 이용하거나 도서·음반·비디오로 복제 이용하거나 방송·공연 등에서 음악 저작물로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 저작권자와 국내 이용자의 다툼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복사기·녹음기·녹화기 등의 복제기기에 의해 책이나 음반·비디오의 무단복제가 증가되어 사회문제화 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먼저 저작물 이용자인 일반국민에게 저작권인식을 확산시켜 본의아니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저작물사용 및 양도계약시에도 권리의무 관계를 문서로 반드시 작성하여 계약을 둘러싼 상호간의 해석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외국과의 계약시 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따른 득실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저작권법의 시행목적이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저작물의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었음을 다시 음미하여 일반국민과 저작자, 이용자, 정부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